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179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희정, 강태근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담당변호사 문고운, 이진욱, 조영도

변 론 종 결 2020. 11. 25.

판 결 선 고 2020. 12. 23.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9.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0. 9. 1. 설립되어 토석 채취 및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1. 4. 27.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1. 4.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 대표 피고 C은 석산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원고는 석산개발과 관련된 피고 B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다. 투자금액 300,000,000원으로 한다.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3. 매월 석산개발로 매출이 발생하여, 수입과 지출이 생길 경우 원고와 피고 C은 협

의하며, 운영회사 피고 B 법인으로 처리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2011. 4. 21. 200,000,000원, 2011. 4. 22.과 같은 달 27.에 각각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투자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1. 5. 16. 20,000,000원, 2011. 6. 28. 25,000,000원, 2011. 7. 11. 50,000,000원, 2011. 7. 13. 10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고, 2011. 4. 28. 피고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동업으로 석산개발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토석매입을 통하여 수익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45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설사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¹⁾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청구원인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과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의 관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인인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기망행위를 비롯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동업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에는 "매월 석산개발로 매출이 발생하여, 수입과 지출이 생길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며, 운영회사 피고 B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위 '을'은 피고 C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계약자란에는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투자금은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았고, 피고 C의 배우자인 D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고 B에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와 피고 C이 당사자인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동업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일에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받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토석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F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돌려받은 점, ② 피고 C은 F으로부터 돌려받은 100,000,000원에 관하여 이를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 C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11. 4. 25.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G과의 해상운송계약에 사용하였다가, 같은 날 G으로부터 20,000,000원을 돌려받은 점, ④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132,250,000원²⁾을 이 사건 동업계약과는 관련이 없는 H에게 지급하는 등 원고의 투자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동업계약과 무관하게 사용한 점, ⑤ 피고 C이 원고의 투자금 중 피고 B의 사무실 월 차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한 돈은 2개월 동안의 월 차임에 해당하는 1,540,000원에 불과한 점, ⑥ 원고의 투자금으로 체결한 계약들이 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석산개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이후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및 2019. 10. 24.자 준비서면 등이 피고 C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C은 원고의 투자금 합계 495,000,000원에서 이미 반환한 40,000,000원을 제외한 4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11. 9.

2)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이 H에게 지급되었다는 주장 중 2011. 4. 26.자 20,000,000원은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과는 무관한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19.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용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훈

 판사 김태진

 판사 윤혜원